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 원우회(이하 '본회'라고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중요정보 소통 및 공유 그리고, 본 대학원 발전과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조직

제3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임원단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법무대학원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원생과 졸업생으로 구성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본회의 운영에 대한 알권리와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총회 소집요구권, 의안제출권 및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3. 모든 집회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할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4.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회의 결정 사항 준수와 재학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6조(임원)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6인
3. 사무국장 3~6인
4. (필요시)고문 1인, 감사 1인, 서기 1인

제7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 및 모임의 운영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원우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술 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 및 부회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예산 및 회계, 원우회 홈페이지를 비롯한 원우회 활동으로 비롯된 모든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를 담당한다. 필요할 경우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선출 및 임기)

1. 임원의 선출은 개강 후 1달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추천 혹은 투표의 방법으로 원우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2. 임원의 임기는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다음 기수 개강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9조(의결)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회의 회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임원단에 의결과 관련된 상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해서 임원단에 심의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단

제10조(지위)

임원단은 본 회의 최고 심의기구이자 집행기구이다.

제11조(구성)

임원단은 원우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필요시 고문 및 감사와 서기로 구성한다. 회장 및 총무의 요청에 의해 각 회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2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① 본 회의 제반 사업(모임)에 대한 계획, 검토, 조정
- ②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
- ③ 총회 소집
- ④ 예산안 수립 및 재정의 집행
- ⑤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⑥ 기타 업무 수행

제 4장 재정

제13조(조성 및 운영)

본 회의 재정은 원우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을 그 출처로 한다.

원우회비는 원우회 구성 후 1달 이내에 납부한다.

원우회장은 원우회 재정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총무는 회계 장부 및 처리 영수증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14조(집행)

본 회의 회계 연도는 각 기수의 입학부터 수료일까지로 한다.

본 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입학 및 수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중도 탈락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본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행사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예결산)

본 회의 재원의 예결산은 종강총회 때 보고하며 매 기수가 끝날 때마다 예결산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를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